





검 사 성 적 서

 <p>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rea Institute of Fire Industry & Technology</p> <p>446-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Tel: 031-289-2830, Fax: 031-287-9066</p>	성적서 번호 : 201600407 페이지 : (1) / (총 4)	
---	---	---

1. 신청인 원 본 재발급

- 업체명 : ~~이름 숨김~~
- 주 소 : ~~주소 숨김~~
- 접수번호 및 접수일 : 제1600188호 2016. 0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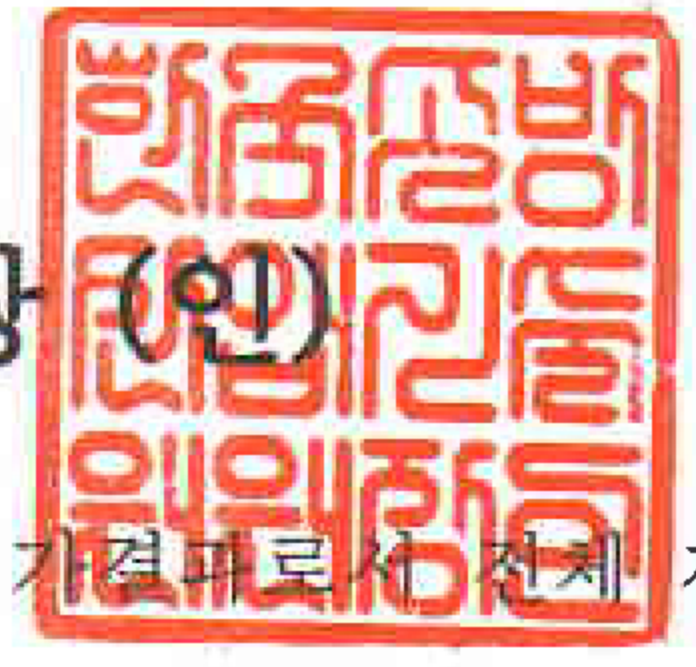
- 2. 검사성적서의 용도 : 형식승인용
- 3. 검사대상종별/시료명 : 에어로졸식소화용구 (강화액, 350 mL)
- 4. 검사기간 : 2016. 04. 29. ~ 2016. 05. 10.
- 5. 검사방법 :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 6. 검사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 7. 검사환경
 - 온 도 : (22.0 ± 1.9) °C, 상대습도 : (49 ± 3) % R.H.
- 8. 검사결과 : 합격
 - ※ 첨부 : 세부 형식시험 결과(2~4 페이지 참조)

확 인	실 무 자 성 명 : 이 하 영 	기술책임자 성 명 : 권 정 우 
-----	---	--

위 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 부터 공인받은 분야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2016년 05월 11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인)



- 비고 1.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검사한 평가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2. 이 검사성적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광고, 선전 등 홍보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첨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small>Korea Institute of Fire Industry & Technology</small>	성적서 번호 : 201600401 페이지 : (2) / (총 4)	
446-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Tel: 031-289-2830, Fax: 031-287-9066		

형식시험결과

업체명	XXXXXXXXXX	형식승인번호	간소16-5
종별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	강화액, 350 mL

시험항목			결과			비고	
조항	항목	기준	시료(개)	검사결과	판정		
제3조	구조 및 작동력	·고정상태사용이나 기계적 조작사용이 아닐 것 ·부식에 의한 기능이상 이 염려되는 부분은 내식 가공할 것 ·내부충전용 가압 가스는 불연성으로 약제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일회용의 구조일 것 ·돌출밸브에 보호장치가 있을 것 ·사용온도범위 안에서 기능이상이 발생치 않을 것	20	시험생략	합격	*	
		작동력은 손가락으로 누름판을 누르는 식 50 N 이하, 레바식 150 N 이하, 회전식밸브는 1/4회전으로 완전히 열려야하며, 4 N·m 이하이어야 함.	1				
		치수검사는 허용공차 내에서 적합해야 함.					
제4조	재질	용기의 재질은 강 또는 경금속이어야 한다.	1	시험생략	합격	*	
제5조	소화약제의 중량 등	소화약제 등의 중량은 700 g 미만일 것	20	시험생략	합격	*	
		소화약제 및 액화가스의 용량은 용기의 90 % 이하	20				
		충전압력은 (35 ± 0.5) °C에서 0.8 Mpa 이하일 것	3				
제6조	소화시험	휴지통화재	잔염이 없고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않을 것	4	시험생략	합격	*
		석유난로화재	잔염이 없고 1분 이내에 재연하지 않을 것	해당없음		-	
		커튼화재	잔염이 없고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않을 것	4	시험생략	합격	*
		방석화재	잔염이 없고 2분 이내에 재연하지 않을 것	4	시험생략	합격	*
		튀김냄비화재	잔염이 없고 1분 이내에 재연하지 않을 것	4	시험생략	합격	*
		자동차 엔진실화재	잔염이 없고 1분 이내에 재연하지 않을 것	해당없음		-	
제7조	내식시험	3 % 염화나트륨 수용액 중에 7일간 담그는 부식시험과 3 %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또는 3 % 황산수용액에 7일간 담그는 부식시험을 한 경우 녹이 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분말 및 할로젠화합물 소화약제를 충전한 것은 제외)	3	시험생략	합격	*	

“계속”



446-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Tel: 031-289-2830, Fax: 031-287-9066

성적서 번호 : 2016004d1

페이지 : (4) / (총 4)





형식시험결과

업체명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번호	간소16-5
종별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	강화액, 350 mL

시험항목			결과			비고		
조항	항목	기준	시료(개)	결과	판정			
제13조	충격시험	높이 1.5 m에서 수평과 수직으로 각각 1회씩 자유낙하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충전가스가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8조(방사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험생략	합격	*		
제14조	소화약제	응고점	응고점은 -20 ℃ 이하	2	시험생략	합격	*	
		강철부식시험	·적용대상 금속재료를 (38 ± 2) ℃에 21일간 놓아둔 경우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이 각각 1일에 3 mg/20cm ² 이하일 것.					
		침전량	변질 전					0.1 vol % 이하
			변질 후					0.2 vol % 이하
		표면장력	·KS M 2525(질산유제 시험방법)으로 액운을 20 ℃로 하여 측정할 경우 33 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N/m 이상 1.5 N/m 이하일 것					
		비중	KS M 0004(화학제품의 비중 측정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을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설계값의 ±0.02 이내일 것.					
수소이온농도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4 이내일 것.							
제15조	표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0	적합	합격			

※기타 : “*” 표시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10조 제2항에 의거 형식시험을 생략한 시험항목임.

“ 끝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small>Korea Institute of Fire Industry & Technology</small>	성적서 번호 : 201600401 페이지 : (3) / (총 4)	
446-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Tel: 031-289-2830, Fax: 031-287-9066		

형식시험결과

업체명	[Redacted]	형식승인번호	간소16-5
종별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형식	강화액, 350 mL

시 험 항 목			결 과			비 고
조 항	항 목	기 준	시료 (개)	결 과	판 정	
제8조	방사시험	방사조작 후 2초 이내 소화 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것 ·방사시간은 (20 ± 2) °C에서 5초 이상 ·방사시간허용범위는 신청값의 30 %범위 내 방사효율은 85 %이상 일 것	6	시험생략	합 격	*
제9조	기밀시험	(48 ± 2) °C의 온수 중에 1시간 침지 후 충전가스가 누설하지 않아야 함.	20	시험생략	합 격	*
제10조	온도반복 시험	사용상한온도에서 24시간 사용하한온도에서 24시간을 놓아두는 상태를 1 사이클로 하여 3사이클 반복 후 제8조(방사시험) 및 제9조(기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동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험생략	합 격	*
제10조의 2	고온시험	자동차엔진실화재에 사용하는 에어졸식 소화용구는 (85 ± 2) °C 의 온수 중에 1시간 담그는 시험에서 용기가 이탈 또는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함.	해당없음			-
제11조	용기의 내압시험	축압식은 다음 각 호 중 높은 값의 시험값 적용 - (50 ± 2) °C에서 폐쇄압력의 1.5배의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 변형되지 아니하고 폐쇄압력의 1.8배의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 파열되지 아니할 것 - 13 kg/cm ² 의 압력을 수압으로 5분 간 가하는 경우 변형되지 아니 하고 15 kg/cm ² 의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 파열되지 아니할 것	10	시험생략	합 격	*
제11조의 2	소화기 가압용 가스용기	소화용구에 사용하는 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기기준 제25조 준용	해당없음			-
제12조	진동시험	진동판에 부착하여 진동을 가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할 것	해당없음			-

“계속”